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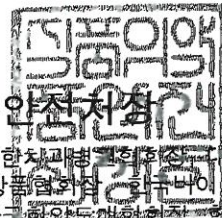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약사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5891호) 개정 · 공포 알림

1.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한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, 수입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사 등록 및 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약사법」 일부개정법률이 18.12.11.(화)자로 개정·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끝.

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, 대한한약사회장, 대한한의사협회장, 대한화장품협회장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, 한국병원약사회장,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, 한국한약도매협회장, 한국한약산업협회장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,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사장,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

주무관 이동원 의약품정책과 전결 2018.12.11.
장 김상봉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정책과-10679 (2018. 12. 11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/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621 팩스번호 043-719-2606 / ldw0925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